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1327호 2018. 4. 2.(월)

조 례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2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9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1
-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공고 ----- 24
-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 73
- 목포시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 74

기 타

- 시정알림판 ----- 79

회람							
----	--	--	--	--	--	--	--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3. 13.) 의결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4. 2.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70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조례 제9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외대상)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
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8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2.5 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가능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지원신청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
2. 목포시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자·보증금액
2. 용자·보증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보증기관
6. 대출·보증절차와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3. 13.)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4. 2.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71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8]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5]

쓰레기봉투제작사양(제9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 일반용 (20ℓ) -

일반생활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혼합금지)
배출시간: 일몰 후 ~ 일출 전 배출

• **쓰레기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	--	--------------------------------------

• **과태료 안내** •

주간,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	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	-------------------------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

목 포 시 장
연락처: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02)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 공공용 (50ℓ) -

1. 이 봉투는 시가지 청소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	--	--------------------------------------

• **과태료 안내** •

주간,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	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	-------------------------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

목 포 시 장
연락처: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02)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광고 게재 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 일반용 (20ℓ) -

일반생활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혼합금지)
배출시간: 일몰 후 ~ 일출 전 배출

• **쓰레기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	--	--------------------------------------

• **과태료 안내** •

주간,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	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	-------------------------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

목 포 시 장
연락처: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02)

광고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 공공용 (50ℓ) -

1. 이 봉투는 시가지 청소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	--	--------------------------------------

• **과태료 안내** •

주간,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	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	-------------------------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

목 포 시 장
연락처: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02)

광고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

[별지 2]

[별표 8]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사양

(앞면)	(뒷면)						
 목포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일반생활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혼합금지) 배출시간: 일몰 후 ~ 일출 전 배출 쓰레기 배출방법 <table border="1"> <tr> <td>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td> <td>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td> <td>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td> </tr> </table> 과태료 안내 주간, 토요일 배출금지 비닐봉지 무단투기 배출시간 위반 음식물 혼합배출 등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 목 포 시 장 연락처: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02)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목포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일반생활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혼합금지) 배출시간: 일몰 후 ~ 일출 전 배출 쓰레기 배출방법 <table border="1"> <tr> <td>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td> <td>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td> <td>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td> </tr> </table> 과태료 안내 주간, 토요일 배출금지 비닐봉지 무단투기 배출시간 위반 음식물 혼합배출 등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 목 포 시 장 연락처: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02)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상징마크

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쓰레기는 일요일부터 금요일 야간에만 버려야 하며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토요일에는 버리면 안 됩니다.”

목 포 시 장 (인)

연락처 : 목포시 자원순환과(전화 : 270-850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 연도 : 년

(광고 게재 시)

[별표 5]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 일반용 (20ℓ) -

일반생활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혼합금지)
배출시간: 일몰 후 ~ 일출 전 배출

쓰레기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과태료 안내

주간,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

목 포 시 장

연락처: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02)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광고 게재 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상징마크

쓰레기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의 다른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쓰레기는 일요일부터 금요일 야간에만 버려야 하며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토요일에는 버리면 안 됩니다.”

목 포 시 장 (인)

연락처 : 목포시 자원순환과(전화 : 270-850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작 연도 : 년

광고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 일반용 (20ℓ) -

일반생활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혼합금지)
배출시간: 일몰 후 ~ 일출 전 배출

쓰레기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과태료 안내

주간,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

목 포 시 장

연락처: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02)

광고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별표 8]

(마 크)

(20ℓ)

재 사 용 종 량 제 봉 투 (20ℓ)

- 상품을 담은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목포시 목 포 시

마 크

쓰레기봉투는 20:00~06:00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다른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연락처 : 목포시자원순환과 (270-3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8]

(마 크)

(20ℓ)



목포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일반생활쓰레기(음식물, 재활용품 혼합금지)

배출시간: 일몰 후 ~ 일출 전 배출

● **쓰레기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혼합금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부착 배출

● **과태료 안내** ●

주간,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시간 위반

비닐봉지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Please dispose of the recyclable and food waste separately by their kinds

- The maximum fine of one million won will be charged if other kinds of bag are used for collecting trash and/or if the discharge time and place is violated.

목 포 시 장

연락처: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02)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3. 13.) 의결된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4. 2.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72호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및 지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중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또는 대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스스로 참여하여야”를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과”를 “호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2.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이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발생 시 관리주체는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제5조제2호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6, 국토교통부)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		제설 · 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 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 · 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 등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제설·제빙작업의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제27 조에 따라 ----- ----- 보도·이 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및 지 붕----- ----- -----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 신체장애자----- -.	3. ----- ----- 신체장애인-----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

것을 말한다.

7. (생 략)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또는 대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 호와 -----.

1. · 2. (현행과 같음)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대하여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고 야간(해가 진때부터 다음날 해뜰 때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일지라도 다음날오전 11시까지는 완료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② (생략)
<신설>

제6조 (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2.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이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발생 시 관리주체는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신 설>

[별표2]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제5조제2호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6, 국토교통부)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²)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 ² 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 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목포시 고시 제2018-4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 4. 2.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1	해안로 79	2018. 04. 02.	건물멸실
12	해안로 81	2018. 04. 02.	건물멸실
13	삼학로 280	2018. 04. 02.	건물멸실
14	자유로20번길 41-2	2018. 04. 02.	건물멸실
15	대양로13번길 18-1	2018. 04. 02.	건물멸실
16	호남로58번길 1	2018. 04. 02.	건물멸실
17	호남로 58	2018. 04. 02.	건물멸실
18	호남로 60	2018. 04. 02.	건물멸실
19	마인계터로39번길 3-1	2018. 04. 02.	건물멸실
20	마인계터로39번길 5	2018. 04. 02.	건물멸실
21	마인계터로39번길 5-1	2018. 04. 02.	건물멸실
22	마인계터로 33	2018. 04. 02.	건물멸실
23	마인계터로 33-1	2018. 04. 02.	건물멸실
24	마인계터로 35	2018. 04. 02.	건물멸실
25	마인계터로 35-1	2018. 04. 02.	건물멸실
26	마인계터로 35-2	2018. 04. 02.	건물멸실
27	마인계터로 35-3	2018. 04. 02.	건물멸실
28	마인계터로 37-1	2018. 04. 02.	건물멸실
29	마인계터로 39	2018. 04. 02.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8-4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4. 2.

목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4. 2. ~ 2018. 4. 16. (15일간)
2.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8. 3. 28.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한 * 현
	주 소	사망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물 부존재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위 치 : 목포시 죽교동 369-104 건축물현황 : 지상1층, 주택, 46.28㎡ 소유자현황 : 한 * 현 목포시 죽교동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 건축행정과 (2061-270-87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목포시 건축행정과
 - 연 락 처 : 061) 270 - 8786
 - 담 당 자 : 정 인 선

목포시 공고 제2018-435호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열람 공고

「목포시 도재시생 전략계획」을 관계 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8. 4. 2.

목 포 시 장

1. 열람 사항 :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 목표 연도 : 2025년
 - 계획 구역 : 50.65km²
 - 도시재생 비전
 - 다도해(多島海)의 母港,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기본 방향
 - 개항의 위상을 재창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항구재생”
 -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젊음과 낭만을 그려가는 “이미지 재생”
 -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삶터 재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7개소(도시경제기반형 1개소,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2개소,
근린재생형 일반형 4개소)
3. 열람기간 : '18. 4. 2. ~ '18. 5. 1, < 30일간 >
4. 열람장소 : 목포시 도시재생과(☎061-270-3684)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놓음(생략). 끝.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요약서 -

2018. 03



목 차

①	계획의 목표 및 범위	3
②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7
③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11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14
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간 연계방안	27
⑥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29
⑦	재원조달계획	33
⑧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38
⑨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3
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46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다도해(多島海)의 모듬(模範)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1. 계획의 배경 및 목표

가.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 주택보급률 100% 초과에 따른 일시의 대량주택공급 수요 감소로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 급감
- 도시공간의 확산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환경 및 교통비용 증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증가
- 구조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책은 생활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되어 바뀌어가고, 신개발 중심 정책은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고 정비·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중임
- 이미 선진국에서는 현대 도시에 대한 반성으로 기능적 편리성 뿐 아니라 도시생활의 질을 함께 고려한 Smart Growth나, New Urbanism, Urban Village, Compact City와 ESSD와 같은 새로운 이념의 도시 개발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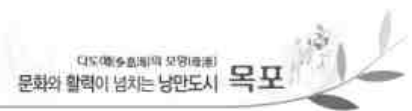
Smart Growth	New Urbanism	Urban Village	Compact City
			
·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정책 패러다임	· 전통적 도시성장을 가진 근린주구로 회귀하고자 하는 신전통주의 운동	· 대중교통중심개발 및 인간적 스케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운동	· 도시공간의 집약적인 복합 개발과 고밀도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 패러다임

나. 목포시의 도시쇠퇴 및 원도심의 쇠퇴

- 목포시는 개항당시 전국 6대도시에 해당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였으나, 2015년 인구 기준 전국 70위권으로 후퇴하였음
- 하당, 남악신도시 등 지속적인 신도시개발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과 청년층의 유출로 인하여 고령화되고 있음
- 특히, 목원동, 유달동, 만호동 등 개항기 목포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원도심들은 생활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12월 5일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였고,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목포시는 법과 관련지침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향후 목포시의 도시재생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목포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활성화계획의 수립방향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체적 방향을 제시함
- 향후,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근거하여 각 구역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짐

라. 체계적 도시재생 추진기반 마련 필요

- 종전의 철거·물리적 개선 중심의 도시재생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쇠퇴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재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의 주체가 행정 및 전문가 중심에서 주민 및 공동체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도시재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중심의 개별적·단기적 사업추진보다는 통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이해 속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계획의 목표

가. 도시의 쇠퇴진단, 지역자원, 잠재력 분석

- 도시의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파악
- 지역의 여건분석, 문제점 도출, 기본구상 마련 및 활성화지역 지정 등 일련의 계획 수립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 지역의 우수한 역사, 문화, 자연, 경제, 인문, 사회적 자산 발굴을 통하여 지역에 특화된 활성화 전략 마련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다도해(多島海)의 모듬(模樣)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나. 목포시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 설정

- 목포시의 상위·관련계획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등과 부합하며, 목포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비전·목표·추진전략 등을 제시하고,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
- 목포 원도심의 여건과 지역 특성, 쇠퇴진단,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방향과 비전 제시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재생방향 제시

- 지역별 쇠퇴정도와 잠재력에 근거하여 재생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각 활성화지역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는 재생방향을 제시
- 선정된 활성화지역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행전략 제시

라. 지속가능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구축

- 공공의 지원 강화 및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 극대화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 기반 구축
- 도시재생추진체계 구축, 자원조달방안 마련,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기초생활인프라계획 등의 추진기반 마련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재생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
-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위협요인 제거 및 효과 증진 유도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다도(多島)의 모듬(模樣)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3.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6년
- 목표연도 : 2025년 (10년 계획)

나.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목포시 전역 (A=50.65km²)
 - 전체 23개 행정동
 - 10개의 도서지역이 목포시의 전체 면적에 포함되나, 금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후보지 검토대상에서는 배제



다. 내용적 범위

- | | |
|----------------------|------------------------|
|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 재원조달 방안 |
| ○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
| ○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유형구분 | ○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계획 |
| ○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 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
| ○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방안 | |

4. 추진 경과

- 2016. 03. 03 :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7. 5. 11 : 주민공청회 개최
- 2017. 5. 15 : 목포시의회 의견청취
- 2017. 6. 30 : 목포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17. 12. 06 :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승인 신청
- 2017. 12. ~ 2018. 1 : 관계기관(부서) 협의(국토부 등 14개 기관·부서)
- 2018. 2. 22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수용)
- 2018. 3. 16 :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 알림 (전라남도⇒목포시)
- 2018. 4. 2 ~ 5. 4 :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공고(시보 게재 30일 이상)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2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모항(母港)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②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목포시의 미래상과 부합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부흥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비전 설정
- 비전에 따른 목표는 개항의 위상을 재창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항구 재생,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젊음과 사랑을 그려가는 이미지 재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삶터 재생으로 도시재생의 목표를 설정함

다도해(多島海)의 모항(母港)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개항의 위상을 재창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항구 재생**”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젊음과 낭만을 그려가는 “**이미지 재생**”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삶터 재생**”

2. 추진전략

목표	추진 전략
항구 재생	· 항만 기능재편에 의한 재생전략 수립 · 항만, 역세권 등 거점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내항 · 목포역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대한 파급효과 극대화 · 목포항, 어시장, 수변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 극대화
이미지 재생	·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기능 도입 · 역사 · 문화자원 및 자연환경자원 등 연계를 통한 관광루트 개발 · 테마거리 조성, 상권활성화 등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 · 스토리텔링을 통한 매력있는 도시 조성
삶터 재생	· 주거지 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확보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마을공동체간 네트워크 형성 · 주민협의체 구성, 지역신문, 마을기업,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 · 마을리더 육성,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2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2. 목포시 도시재생 기본구상

가. 도시재생 생활권역 설정

- 목포시 2020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과 목포시 행정동 및 생활여건을 고려하고 도시
재생전략계획의 도시재생 생활권역 5개소를 설정함



나. 원도심 생활권역 기본구상

1) 지역특성

- 유달산 배후의 저층주거지 형성
- 항만기능 이전으로 인한 내항 기능변화 예상
- 근대역사·문화·자연자원 등 지역자산 풍부

2) 기본방향

- 근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목표역(KTX-SRT), 여객터미널과의 연계성 강화
- 해양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3) 세부전략

- 특화가로 축제 등 근대역사문화 재발견
- 공·폐가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및 주민편익시설 제공
- 목포 내항, 유달산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활용
- 선도지역의 우선추진을 통한 목포 도시재생시스템 안정화



- 지역자산
 - 유달산, 북포항, 목포역, 목포근대역사관, 복합 등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2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海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다. 죽산·산정 생활권역 기본구상

1) 지역특성

- 고하대로 중심 서측 산업단지 동측 주거지 입지
- 신규주거지 개발에도 인구 유출이 심각함
- 목포시청, 목포대 등 교육·행정의 중심지

2) 기본방향

- 산업단지 활성화 및 배후주거지 활성화
- 공공편익 및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
- 유휴 공공·교육서비스 공간의 효율적 활용

3) 세부전략

- 도로, 공원,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 천주교 구교구청, 대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한 재생
- 산정농공단지 재생을 통한 근로여건 및 산업 생산성 증진 유도



○ 쇠퇴분석

- 인구수(-15.2%), 사업체수(-8.0%), 노후주택(68%)

○ 지역자산

- 천주교 성지, 목포시청, 산정농공단지, 목포고 등

라. 상동·삼향 생활권역 기본구상

1) 지역특성

- 종합버스터미널이 입지하나, 그 외는 농촌형 취락형성
- 임성리역 주변 역세권개발 사업 예정
- 대양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성장동력 확보

2) 기본방향

-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
- 자연친화형 주거지 조성
- 공공서비스 및 편익시설의 효율적 이용 유도

3) 세부전략

- 소규모 취락의 경우 '소단위 맞춤형 마을만들기' 실현
- 대박산~지적산~양을산 녹지축 주변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
- 소규모 취락 내 도로, 공원 등 생활인프라 정비



○ 쇠퇴분석

- 인구수(-2.6%), 사업체수(-12.7%), 노후주택(52.8%)

○ 지역자산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임성리역, 지적산 등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2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다도(島多島)의 모원(母源)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남안도시 목포

마. 남해 생활권역 기본구상

1) 지역특성

- 영산로, 삼학도를 외곽격으로 격자형가로망 형성
- 폭이 좁은 격자형 가로망, 저층 노후주거지 밀집
- 삼학도~갯바위문화권~입암산 관광녹지축형성

2) 기본방향

- 공공편익 및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
- 중·저층 주거지 형태 유지 및 주민주도 도시관리 유도
- 해양관광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서비스강화
- 입암천의 효율적 보전 및 활용방안 모색

3) 세부전략

- 도로, 공원,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
-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 갯바위문화권 연계체계 증진 및 자원편익시설 확충
- 남해~입암천의 녹지축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 쇠퇴분석

- 인구수(-8.4%), 사업체수(-12.4%), 노후주택(76%)

○ 지역자산

- 삼학도, 입암천, 유달체육관, 갯바위 문화권 등

바. 하당·옥암 생활권역 기본구상

1) 지역특성

- 기반 및 편익시설이 양호한 신규 주택단지
- 부주산과 부흥산 연계한 녹지축 형성
- 영산강, 삼향천의 양호한 수변공간 확보

2) 기본방향

- 구도심과 상생하는 균형발전 전략 추진
-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활용도 제고 및 기능다변화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 구축

3) 세부전략

- 주민 커뮤니티 형성 및 역량강화방안 마련
- 신도시 외 잔여지역의 주거지재생
- 하당상업지역의 옥암지구로의 상권 분산에 따른 재생전략
- 삼향천의 보전 및 수변공간의 활용도 증진



○ 쇠퇴분석

- 인구수(31.6%), 사업체수(40.3%), 노후주택(5.7%)

○ 지역자산

- 장미의 거리, 청호시장, 평화광장, 부주산 등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3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③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1. 목포시 역사와 입지적 특성

- 목포시는 자원, 교통, 경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는 잠재력이 좋은 항구도시로서 1897년 이른시기에 개항되었으나, 이에 따른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갖는 아픔을 간직한 도시임
- 상대적으로 이른 선진문명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근대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목포의 눈물', '유달산아 말해다오', '목포는 항구다' 등의 노랫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애환이 있는 고전적 항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 있음
- 성장의 정체기에 있는 목포시가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적 자원 등 잠재력은 활용하되, 젊음, 창조, 미래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이미지로의 변화가 필요함



2. 목포시 도시성장과정

- 목포시는 1897년대 개항 이후 현재 원도심 및 선창권을 중심으로 도시확산 진행됨
- 2000년대 하당신도시, 남악신도시 등 신도시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심화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3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다도해(多島海)의 보양(養育)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3. 목포시의 쇠퇴정도

1) 목포시의 인구구조 변화

- 목포시는 1930년대 전국 3대항 6대도시였으나, 국토개발에서 소외되어 지역발전 정체중에 있음
- 인구구조는 인구의 경우 2010년대 이후 점차 감소중에 있으며, 고령화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쇠퇴 중소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2) 목포시 동별 쇠퇴분석 기준

- 동단위로 취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 특성 및 쇠퇴진단 지표 설정
- 쇠퇴지표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분야로 구분하여 총20개 지표를 활용하여 쇠퇴진단을 실시

구분	지표명	산출식	출처	비고
인구·사회 (6)	노령화지수	$(65\text{세이상 인구수} / 15\text{세미만 인구수}) \times 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변화율	$(\text{기준연도 총인구수} - \text{비교연도 총인구수}) / \text{비교연도 총인구수} \times 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교육수준	$\text{중등교육 이하 교육비율} (\text{미취학} + \text{초졸} + \text{중졸}) / 6\text{세이상 인구} \times 100$	목포시 통계연보	
	기초생활수급자수	기초생활수급자수	목포시 내부자료	
	고령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목포시 통계연보	
	노년부양비	$65\text{세이상 인구수} / (15\text{세이상} \sim 65\text{세미만}) \times 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산업·경제 (6)	총 사업제수	총 사업제 수	목포시 통계연보	
	총 사업제수 증감률	$(\text{기준연도 총사업제수} - \text{비교연도 총사업제수}) / \text{비교연도 총사업제수} \times 100$	목포시 통계연보	
	총 종사자수 증감률	$(\text{기준연도 총종사자수} - \text{비교연도 총종사자수}) / \text{비교연도 총종사자수} \times 100$	목포시 통계연보	
	제조업 종사자 비율	$(\text{제조업 종사자수} / \text{전산업 종사자수}) \times 100$	목포시 통계연보	
	고차산업 종사자 비율	$(\text{금융, 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종사자수} / \text{전산업 종사자수}) \times 100$	목포시 통계연보	
	도소매업종사자수 (전명당)	$(\text{도소매업 종사자수} / \text{총 인구수}) \times 100$	목포시 통계연보	
물리·환경 (6)	노후주택비율	$(20\text{년이상 경과된 주택수} / \text{총 주택수}) \times 100$	목포시 건축대장	
	신규주택비율	$(\text{최근5년 안에 신축된 주택수} / \text{전체 주택수}) \times 100$	목포시 건축대장	
	공·폐가율	$\text{공·폐가율} / \text{총 주택수} \times 100$	목포시 내부자료	
	노후건축물비율	$20\text{년경과 건축물수} / \text{총 건축물 수} \times 100$	목포시 건축대장	
	접도율	$(8\text{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필지수} / \text{전체 필지수}) \times 100$	목포시 내부자료	
	과소필지 비율	$\text{과소필지 수} / \text{총 필지 수} \times 100$	목포시 토지대장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3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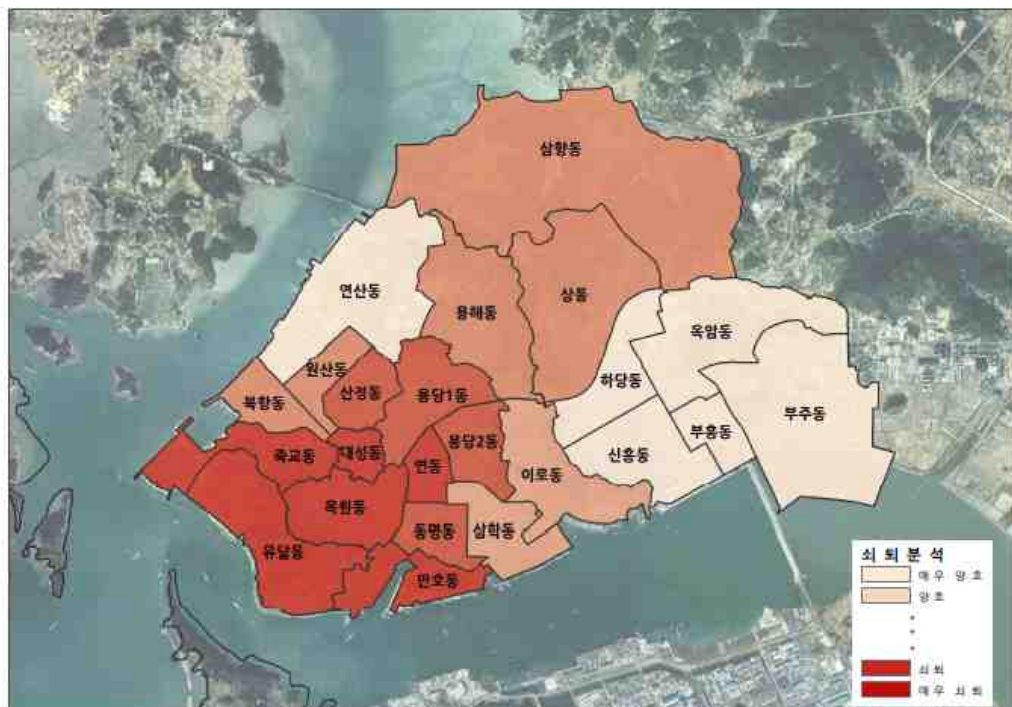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3) 목포시 동별 쇠퇴분석 결과

- 쇠퇴진단 기준에 따라 지역별 쇠퇴도를 분석한 결과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불부합하는 연산동, 하당동, 신흥동, 옥암동, 부주동, 부흥동의 경우 쇠퇴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원도심으로 갈수록 쇠퇴가 심하고, 도시외곽으로 갈수록 쇠퇴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도시재생생활성화지역 법적 지정 세부기준 >

구분	내용	2개이상 불부합 지역
인구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이상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부주동, 신흥동, 연산동, 옥암동, 하당동 (3개불부합) 부흥동 (2개불부합)
총 사업체수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노후 건축물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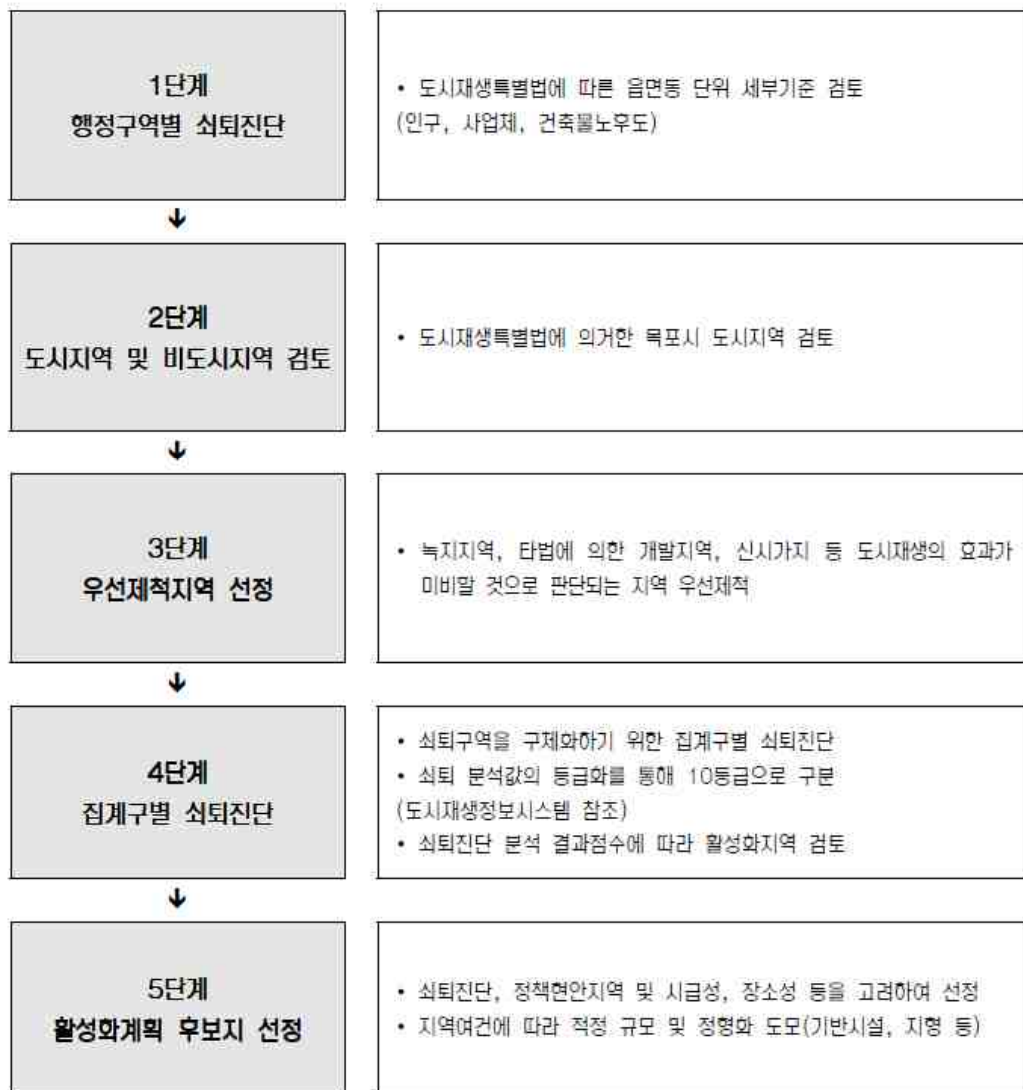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海邊)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계별 분석 방법

- 단계별 분석방법을 통하여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세부 검토부터 추출된 활성화 지역의 우선순위 선정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1단계 : 활성화 지정 기준 검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영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기준 종합 >

행정동	부합 여부			2개 이상 부합	행정동	부합 여부			2개 이상 부합
	인구사회	산업경제	건축 노후			인구사회	산업경제	건축 노후	
대성동	○	○	○	○	연동	○	○	○	○
동명동	○	○	○	○	연산동	X	X	X	X
만호동	○	○	○	○	옥암동	X	X	X	X
목원동	○	○	○	○	용당1동	○	○	○	○
부주동	X	X	X	X	용당2동	○	○	○	○
부흥동	○	X	X	X	용애동	○	X	○	○
북항동	○	○	○	○	원산동	○	X	○	○
산정동	○	X	○	○	유달동	○	○	○	○
삼학동	X	○	○	○	이로동	○	X	○	○
삼향동	○	X	○	○	죽교동	○	○	○	○
상동	○	X	○	○	하당동	X	X	X	X
신용동	X	X	X	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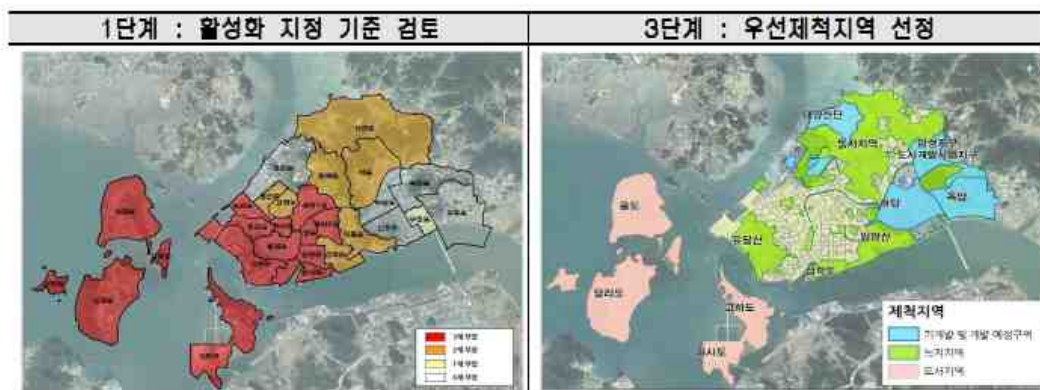
자료 : 도시재생정보시스템

■ 2단계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검토결과
- 목포시 도시기본계획구역 122.49㎢은 모두 도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음

■ 3단계 : 우선제척지역 선정

- 법정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지역 중 대규모 신개발지인 대양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기개발 신도시와 도시재생활성화의 파급효과가 미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과 녹지지역 등을 도시재생활성화예비지역에서 제외함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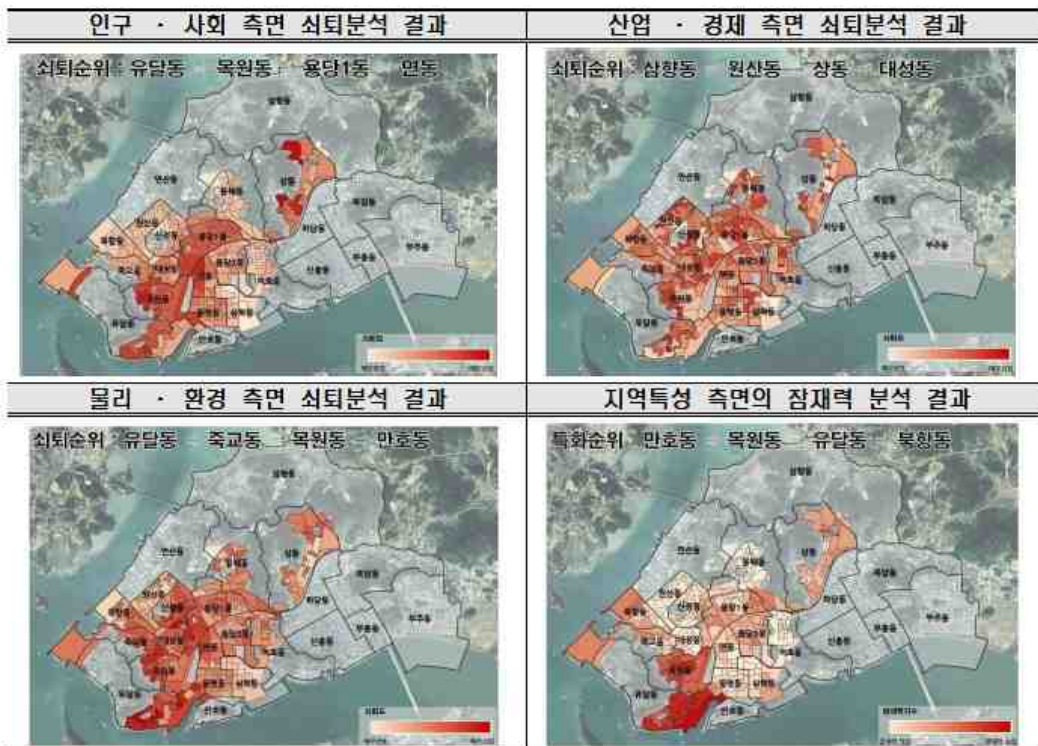
■ 1~3단계 : 도시재생활성화 예비지역 추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계별 분석방법 중 1~3단계를 거쳐 추출된 예비지역을 집계구 단위로 구분하여 269개의 집계구로 추출함



■ 4단계 : 집계구별 쇠퇴진단

- 쇠퇴지표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지역잠재력 분야로 구분하여 총 4개 분야, 2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쇠퇴진단을 실시함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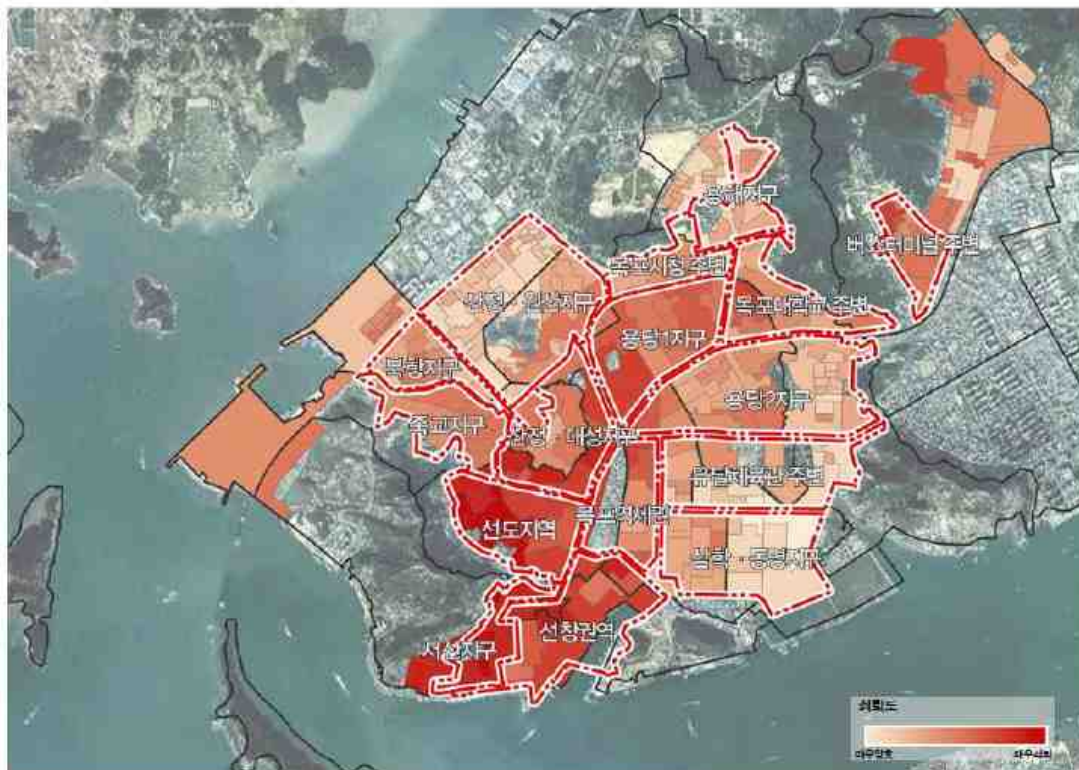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5단계 : 활성화계획 후보지 선정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선정

○ 쇠퇴분석 결과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 규모 및 정형화 도모 (기반시설, 지형 등 고려)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천㎡)
1	선도지역	북원동 일원	624	9	버스터미널 주변	상동 일원 (버스터미널 주변)	297
2	선창구역	만호동 일원	845	10	용당2지구	용당1동 일원	1,178
3	서산지구	서산동 일원	324	11	목포시청 주변	용당1동 (목포시청 주변)	306
4	북포역세권	북포역 주변	483	12	북항지구	북항동	346
5	산정·대성지구	산정동, 대성동 일원	647	13	산정·원산지구	산정동, 원산동 일원	1,240
6	용당1지구	용당1동 (북포고, 북상고)	782	14	유달제육관 주변	용당2동 (유달제육관 주변)	836
7	죽교지구	죽교동 일원	465	15	용해지구	용해동 일원	333
8	목포대학교 주변	용해동 일원(목포대)	502	16	삼학·동명지구	삼학동, 동명동 일원	851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 정비대상 선정

○ 쇠퇴분석결과, 정책현안지역 및 시급성, 장소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지 선정

■ 파급효과 극대화 지역 ■ 도시재생의 유형별 배분 ■ 도시재생의 시급성 ■ 재정 및 사업실현성 고려		우선 7개소 선정	■ 중심지가지형 (2개소) - 선도지역, 선창권역 ■ 근린재생 일반형 (4개소) - 서산, 산정·대성, 죽교, 용당1지구 ■ 도시경제기반형 (1개소) - 목포역세권
---	--	-----------	--

지구명	위 치	유형	면적(천㎡)
선도지역	목원동 일원	근린재생형 중심지가지형	624
선창권역	만호동 일원	근린재생형 중심지가지형	845
서산지구	서산동 일원	근린재생형 중심지가지형	324
목포역세권	목포역 주변	도시경제기반형	483
산정·대성지구	산정동, 대성동 일원	근린재생형 일반형	647
용당1지구	용당1동 (목포고, 목상고)	근린재생형 일반형	782
죽교지구	죽교동 일원	근린재생형 일반형	465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듬(模樣)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3) 도시재생 단계별 추진계획

- 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쇠퇴진단시 활용하였던 4개 특성, 22개 지표의 등급 합을 통해 순위를 선정

[활성화지역별 종합등급과 및 우선순위]

우선순위	지역	총점	면적(㎡)	권역	비고
1	선도지역	100	624	중심지형	기추진
2	선창권역	107	845	중심지형	2017 뉴딜사업 시범사업 선정
3	서산지구	94	324	근린재생 일반형	
4	목포역세권	120	483	도시경제기반형	유형배분
5	가 산정대성	113	647	근린재생 일반형	
	나 용당1	114	782	근린재생 일반형	
	다 죽교지구	118	465	근린재생 일반형	

※ 5순위의 '가~다' 는 추진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3. 활성화지역 후보지 재생방향

■ 목원동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유형	·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선도지역)
행정구역	· 목원동 일원
규모	· 600,000㎡
지역 특성	· 목포역·목포항 중심 초기 도심 형성 지역으로서 서민생활의 근원지 · 유달산, 녹적봉, 조각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 보유 · 근대역사문화자원 및 유달예술타운 연계 활용 가능
쇠퇴 현황	· 외곽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력권 유출로 인한 쇠퇴 · 활성화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가 및 빈집 증가



지역 주요자원	유달산	목포문화재단	중앙식료시장	마인게터	자범석·김우진	보해양조
지역 주요자원						
재생 방향	목표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전략 ·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 지역여건 맞춤형 지역자산 활용방안 마련, 관광 편의·매력도 증대 · 상권 활성화 : 목포를 대표하는 특화상권 조성, 상가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노후·불량주택의 물리적 개선, 주거지역 마을환경 개선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 활성화 및 노인일자리 거점 마련,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화 방안					

<도시재생선도지역 세부구상도>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선창권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행정구역	· 만호동, 동명동, 유달동 일원
규모	· 845,000㎡ (육지부 694,097㎡)
지역 특성	· 일제강점기시대 격자형 가로체계 · 목포진 및 77계단 주변 구릉지 형성 · 다양한 근대역사문화자원 및 건축유산 분포 · 관광객을 위한 식당 및 여시장 비율 높음
쇠퇴 현황	· 도심공동화로 공(폐)가 및 노후불량주택 다수 분포 ·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부족 · 수렴이전에 따른 상권공동화 가속 예상



지역 주요자원	목포내항	여객터미널	항동시장	목포진	새뜰사업	구 일본영사관
재생 방향	목표					
	전략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세부구상도>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서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행정구역	◦ 서산동 일원
규모	◦ 324,000㎡
지역 특성	◦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2·3구역 해제) 추진에 따른 관리 필요(일부 새마을사업 공모 추진중) ◦ 유달산 둘레길이 서측 경계를 이룸, 바다전망 양호 ◦ 성욕기념관, 유달조, 근대역사박물관, 보리마당, 임마누엘수양관 등 지역자원 풍부
식각 현황	◦ 건축물 노후화 심각 및 생활인프라 열악 ◦ 촉진구역 지연 장기화에 따른 슬럼화 ◦ 공동화로 인한 공(폐)가 다수 분포



지역 주요자원	
재생 방향	목표 보리마당 전망대 설치 및 바다전망길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 보리마당의 공터를 활용한 전망대 설치 ◦ 보리마당로를 활용한 바다전망길로 조성 ◦ 공·폐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기반 확보 및 문화·예술공간 활용(시화골목길 정비) ◦ 슬럼화된 골목길 정비를 통한 마을경관 개선 ◦ 기반시설 : 슬럼화된 골목길 정비 및 근린공원 조성 필요

<서산지구 세부구상도>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수출하)역 모양(후촌)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목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 도시경제기반형
행정구역	◦ 동명동, 연동 일동
규모	◦ 483,000㎡
지역 특성	◦ KTX, SRT 종착역 목포역 입지, 역사관광개발 의지 높음 ◦ 철도, 도로, 여객터미널이 집적한 호남권 교통중심지 ◦ 목포역 동측으로 저층 노후한 주거지 밀집
쇠퇴 현황	◦ 목포역에 의한 동측과 서측 생활권 분리 ◦ 목포역 동측 저층 주거지 노후화 및 생활인프라 부족 ◦ 생활여건 취약으로 사회 취약계층 및 고령자 밀집



지역 주요자원	삼학도	목포역	구 자유시장	김대중 기념관	호남주차장	근대건축양식
재생 방향	목표	목포역세권 및 삼학도 주변 민간투자사업 유지에 의한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 목포역 입체화를 통한 동·서측의 교통·경제 연결 ◦ 목포역 복합환승서비스 구축 ◦ 목포역세권 토지이용 고도화 및 복합화 ◦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창조적 일자리 창출 ◦ 기반시설 : 역전 주차장 확충 및 청호고가도로 개설 필요				

<목포역세권 세부구상도>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험(冒険)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산정·대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 근린재생형 일반형
행정구역	• 대성동 일원
규 모	• 647,000㎡
지역 특성	• 목포산정동 성당, 양동교회 등 근대 목포 종교중심지 • 현재 성 미카엘(목포 카톨릭성지) 건축중 • 정명여고, 목포여고 등 구도심 교육시설 밀집지 • 구릉지 주변으로 저층 주거지 밀집하고, 북측에 신규 아파트 조성완료(LH대성지구)
쇠퇴 현황	• 건축물 노후화 및 생활인프라 수준 저조 • 카톨릭 성지가 입지한 구릉지 주변 생활환경 열악 •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등 통학환경 불량



지역 주요자원	카톨릭 성지	정명여중 사택	목포 양동교회	목포중앙초교 등	육장 장주원	구릉형 주거지
재생 방향	목표	카톨릭성지 조성사업 및 교육시설과 연계한 주거형 도시재생				
	전략	• 카톨릭성지와 양동교회, 정명여중 등 지역자산을 연결하는 특화가로 조성(현) 노송길, 구)솔갯재) • 목포여고, 목포정명여중고 등 여학생들의 통학환경에 대한 배려 • 카톨릭성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생활인프라 조성 • 기반시설 : 생활권공원 및 주차장, 작은도서관 등 필요				

<목포역세권 세부구상도>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多島)의 모듬(模樣)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 용당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 근린재생형 일반형
행정구역	• 용당1동, 산정동 일원
규모	• 782,000㎡
지역 특성	• 대상지 북측에 웰빙공원(폐철도부지) 조성 • 목상고(김대중대통령 기념관), 목포고 등 전통적 교육시설 입지(목상고 이전 추진 협의중) • 청호중학교는 용해2지구 공동주택단지로 이전 예정
쇠퇴 현황	• 건축물 노후화 및 생활인프라 수준 저조 • 주거지 내부 대규모 유흥지 방지에 따른 경관 악화 • 구릉지 주변 나대지의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 악화



지역 주요자원	웰빙공원	명도복지관	동부시장	목상고	목포고	청호중(이전예정)
재생 방향	목표	목포고와 목상고의 추억만들기를 통한 도시재생				
	전략	• 청호중, 목상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기능 확보 • 목상고~목포고를 연결하는 추억의 거리 조성 • 동부시장 상권활성화사업추진 •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협정 등을 통한 지역관리 유도 • 웰빙공원 특화거리 등과 연계한 보행루트 확보 • 기반시설 : 생활권공원 및 주차장, 작은도서관 등 필요				

<용당지구 세부구상도>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 죽교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 근린재생형 일반형
행정구역	• 죽교동 일원
규모	• 465,000㎡
지역 특성	• 유달산 북단, 돌레길 진입로 2개소 입지 • 홍일고, 덕인중고, 해인여중고, 북교초 입지 등 교육시설 다수 입지 • 북항로 주변 근린상업, 북항 인근에 숙박시설 입지
쇠퇴 현황	• 건축물 노후화 및 생활인프라 수준 저조 • 통학로 정비 미흡, 보행경관 열악 • 대단지 내 사회, 복지, 문화, 커뮤니티공간 부족



지역 주요자원	유달산 돌레길	덕인 중·고	해인 중·고	홍일고	국유지(기재부)	기반시설
지역 주요자원						
재생 방향	목표	죽교 도서관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재생 방향	전략	• 죽교주민센터 및 주변 통합 정비를 통한 도서관마을 조성 • 통학로 정비를 통한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 • 유달산 돌레길로의 진입로 정비 • 공공자산(주민자치센터 부지, 나대지 등)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민서비스 제공 • 기반시설 : 통학환경 불량 및 문화·복지 서비스 부족				

<죽교지구 세부구상도>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연계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보양(養)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간 연계방안

- 목포시 도시재생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함
- 활성화 구역별 개별적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

구분	도입기	확장기	안정기	
지역	· 목원동 (선도지역)	· 선창권 · 서산지구	· 산정·대성 · 용당1지구 · 죽교지구 · 목포역세권	용당2지구 등 9개지구
계획 방향	· 원도심 활성화	· 지역자산 활용 관광활성화 · 민간투자 유치	· 주거환경 재생 · 민간투자 유치	도시재생 여건 성숙에 따라 활성화지역지정 확대
계획 내용	· 지역자산 활용한 관광활성화 · 특화거리 조성 · 주민역량강화 등	· 생활인프라 개선 · 일자리 창출 · 문화, 커뮤니티 공간 확보	· 주거환경 개선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확보 · 보행환경 개선	
연계 방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도로 및 보행로 연계 · 선도지역과 선창권의 관광활성화 사업 연계 · 활성화 구역별 주민조직간 연계·지원 프로그램 마련 · 1순위 지역의 우수 도시재생 아이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표준화, 성과관리 철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연계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2. 활성화지역 후보지간 관광루트 개발

- 삼학도 및 활성화지역별 관광루트 조성을 통해 관광시너지 효과 기대
- 유달산 케이블카에 의해 유입될 관광객들을 활성화지역들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로 끌어들이며 지역 활성화 및 수익창출 유도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루트>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6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모퉁이(角隅)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⑥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1. 중앙 및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체계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조직해야함
- 목포시는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담조직(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축함



2. 지자체 부서간 및 중앙부처 협업체계 구축

- 각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과는 계획 및 사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 도시재생사업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부서 및 부서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지원사업비 투입계획을 작성하며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6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모듬(模範)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3. 도시재생지원센터

가. 기본방향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사업 초기에는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별 취지에 맞도록 각각 역할을 수행하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각 활성화지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토록 함

단 기 (안)	중 장 기 (안)
○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로 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별 사업성과 취지가 다르므로 지원센터의 역할도 차별화하여 각 역할에 따른 개별 활성화지역 지역센터를 설립토록함 ○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별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및 추진성과를 총괄·계획함으로써 현장지원센터간 정보공유 및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나.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설 립 : 2014. 9 행정직영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2015. 1 개소식)
- 근 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주 소 : 목포시 영산로 59번길 33-5 3층
- 온라인 : [홈페이지] www.mokpourc.co.kr
- 조직도 : 상근인원 4인
(센터장 1, 사무국장1, 사무원2)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6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모험(冒険)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4. 주민조직 협의체 구성(안)

- 도시재생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고 활성화지역별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주민, 상인, 지역전문가 등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 각 활성화지역별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와 주민대표가 함께 주민조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견 수렴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및 콘텐츠를 발굴,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

■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본방향

<도시재생사업 추진 프로세스>



■ 주민협의체 구성(안)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안)>



5.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책임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 하도록 유도
- 다양한 주체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원활한 정보교류 및 지역문제 해결 도모
-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가 체계적 의사전달 구조 마련 및 사업추진 조직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6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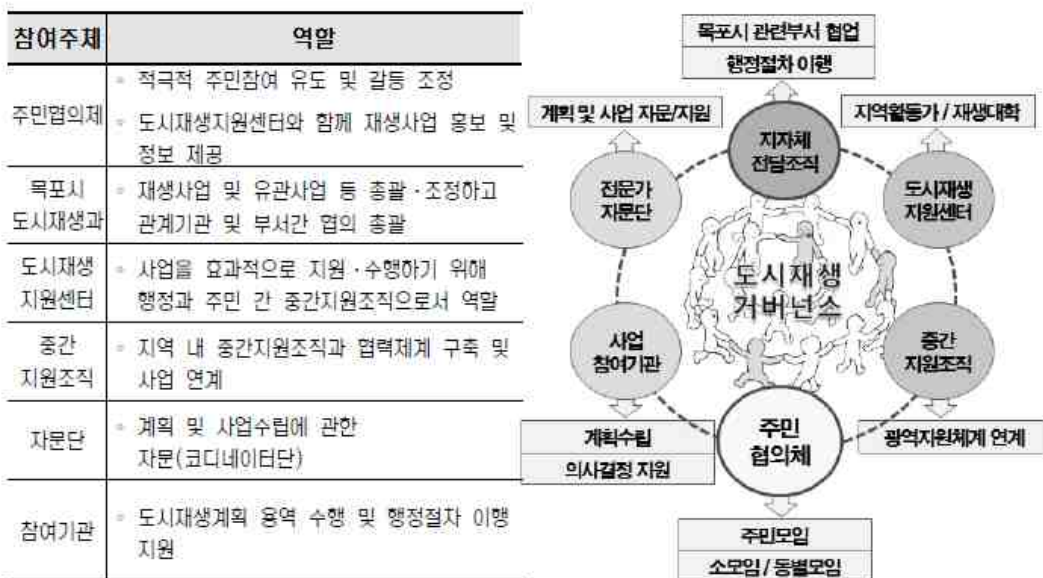
다도해(多島海)의 모원(母源)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실천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천적 거버넌스 체제도>



■ 지속가능한 협의체 유지관리방안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7 **재원조달계획**다도해(多島海)의 모연(母眼)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7** **재원조달계획****1. 재원조달 기본 방향**

- 도시재생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정확히 산출하고, 국가 보조금·지방비·민간투자 등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 마중물 예산 및 새뜰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등 각 부처지원사업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자체는 국비 매칭비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예산의 우선 확보를 통해 국비지원과 연계한 적절한 시기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공공의 인센티브,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도입하여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설립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기반을 마련을 도모해야 함

2. 국비 확보 방안**1)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되며, 근린재생형은 다시 중심시가지 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가능
- 2014년 13개소, 2016년 3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목포시는 2014년 목원동 일대 1개소가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 확보함

유형		재원조달계획 (억원/개소)			비고
		전 재	국 비	지방비	
근린 재생	일반	100억	50억	50억	용당지구 등 4개소
	중심시가지	200억	100억	100억	선도지역, 선창권
도시경제기반형		500억	250억	250억	목포역세권

2) 도시재생 뉴딜사업

-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이 중앙주도 방식, 대규모 계획중심, 미흡한 지원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성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으로, 2017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발표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7 자원조달계획

다도해(多島海)의 모원(母源)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뉴딜사업에는 주거복지형 주거재생 사업,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 포함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 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 살리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 지원형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 근린형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 시가지형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 기반형	• 국가·도시 자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영커시설 구축 등 새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부동산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5만㎡~50만㎡까지의 면적기준 제시
- 국비와 지방비 매칭은 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 하여 지역여건에 따른 매칭비율 차등화 검토
 - 국고보조율(예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지역 60%
 - 다만, 지방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더라도 국비지원 규모는 8천억원으로 총액의 변동은 없음

<사업유형별 국비 지원한도 및 집행기간>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권장 면적규모	5만 이하	5~10만 내외	1~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집행기간	3년간	4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국비지원 한도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150억원	250억원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7 자원조달계획

다도해(島海)의 보연(博延)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2) 중앙부처 연계사업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부처별 단위사업의 추진목적, 세부사업, 지원규모, 신청방식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

<도시재생 연계 가능한 부처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H/W 사업 (10개 부처, 23개 사업)		SW사업 (8개 부처, 20개 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안전행정부	지역녹색성장기반구축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역공동체일자리
소방방재청	소화전정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재해위험지역정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문화재청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체육진흥시설지원		문화재활용 활성화
문화재청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이전사업화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지역특화발전특구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입지 환경개선		기술인재공급 및 활용지원
	도시가스공급		기술확산지원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기반조성		지역특성화산업육성
환경부	하수관거 정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판로지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중소기업인력지원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시설지원
	복합환송센터 개발		방과 후 활동지원
	국가하천 정비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지방하천 정비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품격 향상	고용노동부	대상별취업지원
	도로병목지점 개선		사회적기업 육성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여성가족부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새마을사업		
	환승체계 구축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확충		

3. 지방비 확보 방안

1) 재정소요 규모 산정

-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한 마중물사업 예산 확보 및 기타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활성화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예산 계획 수립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7 자원조달계획

다도해(島海)의 보연(博延)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 7개소 전체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비 총 1,558억원 소요

구분	국토부		타부처사업			예산금액(억원)				비율	비고
	뉴딜사업	기타사업	문체부	해수부	여가부	총액	국비	도비	시비		
선도지역	208	-	108	-	6	322	167	-	155	5:5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
선창권역	250	115	56	32	-	453	267.5	-	185.5	6:4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서산지구	170	-	-	-	-	170	100	-	70	6:4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목포역세권	420	-	-	-	-	420	250	-	170	6:4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산정·대성	170	-	-	-	-	170	100	-	70	6:4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용당1구역	170	-	-	-	-	170	100	-	70	6:4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죽교지구	170	-	-	-	-	170	100	-	70	6:4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총 계	1,558	115	164	32	6	1,875	1,084.5	-	790.5		

2)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핵심인프라 등 주요예산사업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등은 일반회계로 사용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안)>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중 10% 이상의 금액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의 일부 ◦ 「재건축조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자입금 ◦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7 재원조달계획

다도(多島多港)의 유망(有望)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4. 주택도시기금의 활용

- 2015년 8월 도시재생사업의 기금지원에 대한 기준 및 도시재생사업의 금융보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
-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자 등을 지원 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

구 분		주요내용
계정	주택	· (조성) 용자원리금 회수 등 자체재원과 국민주택채권·정약저축,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달 · (운용)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
	도시	· (조성) 주택계정으로부터 전입금, 지특회계로부터의 전입 예수금 등 · (운용)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 용자 등
기금관리		· (운용 및 관리주체) 국토교통부장관 · (전담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법 제10조, 제26조) · (재수탁) 우리은행(간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일반수탁)
금융지원 방향		· (경제활성화형)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시설(상업·업무·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용자 뿐만 아니라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주민참가형)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시행하는 사업비,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용자 지원

<도시재생기금 기능 재정립>

		1세대 주택기금	2세대 주택도시기금
기능 재정립	지원대상	주택	주택 + 도시
	지원방식	용자	용자+출자, 투융자, 보증 등 다각화
	정책재원	정부 재정(기금 포함)	시장 민간자금 유치
	제도·상품	금융기관 관점	금융소비자 관점
	운영체계	시중은행 위탁	전담 운용기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8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보령(保寧)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⑧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용자, 국공유지 재산 처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함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사항>

구 분	도시재생법	주요내용
보조 또는 용자 지원	제27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용 등을 지원 가능
국공유재산 등 처분	제30조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국유 및 공유재산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우선으로 매입·임대 또는 양여 가능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제31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이 가능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정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의 감면 가능
건축규제 완화 등	제32조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법상 최대용적률 초과 불가) 주차장 설치기준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완화 「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시 임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가능

2.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1)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포시는 2014년 12월 29일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원만한 시행 및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 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목포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목포시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도시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8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다도해(多島海)의 모듬(母畵) 목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4조(책무 등) 제5조(주민의 참여)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1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제1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제16조(행위 등의 허가)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자체평가 등)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18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19조(주민협의체) 제20조(사업추진협의회) 제21조(도시재생협정)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2조(보조 또는 융자) 제2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24조(지원금액의 환수)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2)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 목포시는 2006년 1월 16일 국내 최초로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원도심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원도심 지원조례에 따라 원도심권역내 도로, 주차장, 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특화의 거리 내에 입주한 건축물의 수선비용, 원도심권역내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시 비용 등의 보조가 가능함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방향) 제3조(정의) 제4조(시의 책무 등) 제5조(권역지정) 제6조(특화의 거리 지정)
제2장 지원의 대상 및 관리 등	제7조(지원범위) 제8조(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 제9조(임대료의 지원) 제10조(외국인의 지원) 제10조의2(축제 및 행사 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 제12조(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제13조(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 제14조(보조금 회수) 제15조(보조금 수혜자의 의무)
제3장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의 임기) 제20조(회의) 제21조(간사 및 서기) 제22조(수당 및 여비)
제4장 보칙	제23조(준용) 제24조(시행규칙)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8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다도해(동해)의 보연(海連)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3)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 목포시 목원동 일원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14.04.28.)되어 주민 주도형 재생 사업 활성화, 공동체의 육성 등 도시재생 목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를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함
-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재생사업 시행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구역내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재생 목적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의 구성>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기본방향) 제3조(적용 대상) 제4조(시설물 위탁 및 관리) 제5조(수탁기관 선정) ◦ 제6조(특화의 거리 지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운영지원), 제1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11조(지도·감독)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준용)

4) 목포시 도시재생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목포시 목원동 일원 600,000m²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14.04.28.)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계획이 승인('14.12.15.)되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산(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공동체 기업을 설립·운영하여 공동체를 회복·강화하고 나아가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도시재생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제정함

<목포시 도시재생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분야	◦ 게스트하우스, 창업·일자리창출, 문화예술·특화음식, 재민·공모, 재생마을기업
마을기업 요건 및 지원내용	◦ 조직형태, 지원내용
마을기업 운영체계	◦ 목포시, 마을기업 지원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위탁기관)
기 타	◦ 추진절차, 마을기업 심사, 마을기업 약정체결, 사업비 회계처리 등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8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다도예(多道藝)의 모원(募源)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1) 도시재생대학 운영

- 목포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기본구상 단계, 계획수립 단계) 및 사업 시행 시에는 지역주민과 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를 시행함
- 단순 주민의견수렴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이론강의, 답사 등을 수행함

<도시재생대학 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심화과정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유지·관리단계
• 도시재생 이해 • 주민의견 수렴 • 재생 아이템 발굴	• 사업별 심화과정 • 공동체 형성 • 주변리더·마을활동가 발굴 • 단위사업 연계	• 마을기업 육성 • 주민협정 체결(경관, 건축협정) • 건강, 안심, 여성친화마을 조성

2) 주민공동체 구성 지원

-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유도 및 주민 간 합의 형성을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조직으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함
- 주민협의체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예비주민협의체, 동별·주제별 주민협의체, 사업별 주민협의체로 구성함
-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통·반장, 부녀회, 청년회,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일반 지역주민 등을 중심으로 '예비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8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다도예(多島例)의 모인(模印)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주민협의체 구성과정>



- 주민협의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구성
- 주민협의체의 조직명, 인력구성,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방식은 주민협의체 내 주민들 간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결정

3) 전문가 활용

-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분야별 코디네이터 및 현장 활동가를 선정함
-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 구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전문가별 역할>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총괄·조정 - 활성화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 설계 용역 및 공사 등의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 등 검토 -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시행주체 선정 및 운영주체 발굴 -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부서별·분야별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조정 - 행정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정
분야별 코디네이터	-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해당 분야에 대한 특화계획 및 실행방안 마련 / 분야별 단위사업 시행주체 발굴 - 전문 분야별 아이디어 제공 및 사업관리 / 필요시 핵심 콘텐츠 관련 세부사업 시행
현장 활동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지원 - 전략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 주민의견수렴 및 의사전달 역할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적 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등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9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다도해(동해)의 보영(海濱)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9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설정

- 기초생활인프라(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활성화 지역별 국가적 최저기준 검토
- 활성화 지역별로 기초생활인프라가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분석하여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방안 모색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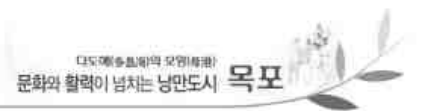
부 문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생활권 규모		
			대(인구5만 이상)	중(인구2~ 3만이상)	소(인구 1만명)
교통시설	공공주차장	주거지역 내 주차장 확보율 : 70% - 시지역 1대/주택규모 85㎡ - 군지역 1대/주택규모 95㎡			○
공간시설	생활권공원	1인당 공원면적 9㎡			○
	근린광장	2,000~4,000세대당 1개소			○
유통·공급시설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100%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유지원	2,000~3,000세대당 1개소			○
	초등학교	4,000~6,000세대당 1개소 학급당 학생수 : 21.5명			○
	공공체육시설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 : 4.2㎡			○
	도서관	■ 지역거점도서관 : 인구 3만명당 1개소 ■ 작은도서관 : 500가구 이상 1개소 (건물면적 33㎡ 이상)		○	○
	노인의료 복지시설	인구 3만명당 1개소		○	
방재시설	저류시설	목표연도 내 확충강우량을 결정 후 필요저류시설 확보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100%	○	○	○

2. 기초생활인프라 계획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제시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목포시 인프라 시설과 비교하여 우선 확보되어야 할 시설을 검토하였으며, 목포시 활성화지역의 생활권 규모는 소(인구1만)에 해당
-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 연계하여 확보 방안 제시
- 향후 목포시 기초생활인프라 수요공급상황을 고려하여 부족지역에 대한 점진적 확충 방안 마련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9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활성화지역별 기초생활인프라 미달현황을 분석하여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
-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 등 대상지에는 없으나 대상지 바로 인근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활성화계획 시 추후 연계성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필요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 실시

〈기초생활 인프라 현황분석 및 계획〉

지역	인구/ 세대	구분	공공 주차장	생활권 공원	근린 광장	상수도	유치원	초등 학교	공공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하수도
선도지역	7,497인/ 4,040세대	최저 기준	1,765면	67,471㎡	1개소	100%	1개소	1개소	31,486	8개소	100%
		현황	407면	11,628㎡	-	100%	1개소	-	-	1개소	98%
		부족수	1,358면	55,843㎡	1개소	-	-	1개소	31,486	7개소	2%
선창권역	4,315인/ 2,534세대	최저 기준	670면	38,835㎡	1개소	100%	1개소	-	18,123	5개소	100%
		현황	489면	33,013㎡	-	100%	1개소	-	-	-	98%
		부족수	181면	5,822㎡	1개소	-	-	-	18,123	5개소	2%
서산지구	3,697인/ 2,121세대	최저 기준	834면	33,270㎡	1개소	100%	1개소	-	15,526	4개소	100%
		현황	25면	43,517㎡	-	100%	1개소	1개소	-	-	98%
		부족수	809면	-	1개소	-	-	-	15,526	4개소	2%
목포역세권	3,907인/ 2,026세대	최저 기준	1,020면	35,159㎡	1개소	100%	1개소	-	16,407	4개소	100%
		현황	139면	541,857㎡	-	100%	1개소	1개소	-	-	98%
		부족수	881면	-	1개소	-	-	-	16,407	4개소	2%
산정· 대성지구	5,000인/ 2,600세대	최저 기준	2,026면	45,000㎡	1개소	100%	2개소	-	21,000	5개소	100%
		현황	-	10,827㎡	-	100%	1개소	1개소	-	-	98%
		부족수	2,026면	34,173㎡	1개소	-	-	-	21,000	5개소	2%
용당1지구	12,248인/ 6,064세대	최저 기준	2,215면	110,232㎡	2개소	100%	2개소	1개소	51,442	12개소	100%
		현황	102면	16,255㎡	-	100%	2개소	1개소	-	-	98%
		부족수	2,113면	93,977㎡	2개소	-	-	-	51,442	12개소	2%
죽교지구	3,860인/ 2,091세대	최저 기준	2,344면	34,920㎡	1개소	100%	2개소	-	16,296	4개소	100%
		현황	150면	3,427㎡	-	100%	1개소	1개소	-	1개소	98%
		부족수	2,194면	31,493㎡	1개소	-	-	-	16,296	3개소	2%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9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다도예(多島夜)의 오연(五連)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3. 기초생활인프라 달성방안

1) 기본방향



2) 달성방안

구 분	달성방안
교통시설	- 도시재생 예비후보지 7개소에 대하여 모두 공공주차장의 추가 공급이 필요함 - 후보지별 공공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확보하여 공공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주차면 구획이 가능한 자투리땅을 전수 조사하여 공공이 부지를 매입하여 소규모로 지속적으로 공공주차장을 공급하도록 함
공간시설	- 도시재생 예비후보지 7개소에 대하여 모두 생활권공원의 면적이 부족한 상태이며, 근린광장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생활권공원과 근린광장의 추가 공급이 필요함 - 후보지별 활성화계획 수립시 활성화지역 내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근린광장의 위치와 면적 현황을 조사하고, 기 조성된 공원, 광장과 거리,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간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함
유통공급시설	도시재생 예비후보지 7개소는 모두 도시지역으로서, 상수도가 100% 공급되어 있음
공공·문화 체육시설	- 도시재생 예비후보지 7개소에 대하여 모두 유치원 및 초등학교시설이 부족하지 않음 - 체육시설의 경우 예비후보지 모두 전무한 상태로서, 활성화계획 수립시 간이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시설현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유형의 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 - 목포의 지역거점 도서관수는 3개소로 최저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시차원의 공공도서관 확보계획이 필요함. 작은도서관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확보가 시급하며, 마을회관, 복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과 복합시설로 건립하도록 유도함
방재시설	도시재생 예비후보지 중 인구 2~3만 이상의 대상지는 없음
환경기초시설	도시재생 예비후보지 7개소는 모두 도시지역으로서, 하수도가 100% 공급되어 있음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1. 성과관리 기본방향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시행 과정상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실적의 제고 및 질적 성과의 향상을 도모하여야함
- 모니터링 목표항목의 설정은 물리적 재생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을 모두 포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의 지표 설정은 도시 여건과 도시재생에 부합하는 지표로 설정함

2.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1)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체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방안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 활성화지역별로 성과관리 방안에 따른 추진실적보고서를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전라남도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 필요

종합평가	◦ 지자체, 광역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제출 자료(보고서) 등 근거하여 종합평가 시행	국토교통부
------	--	-------

추진실적평가 결과서 제출

추진실적 평가	◦ 지자체 성과관리 추진실적 보고서를 반영하여 실적 평가	전라남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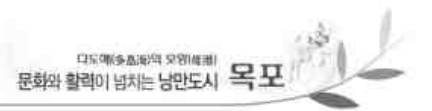
성과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자체 성과관리	◦ 성과관리방안 수립 ◦ 성과지표 및 기준 설정 ◦ 성과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목포시
---------	---	-----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2)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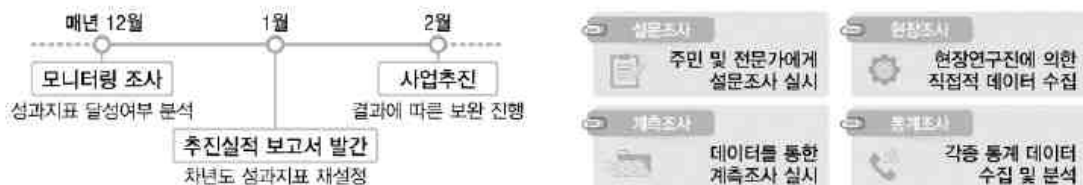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시행 과정상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실적의 제고 및 질적 성과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도시여건과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하며, 활성화지역별 활성화계획 수립시 현황 및 여건에 맞는 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

<목포시 성과관리 목표지표 항목>

구 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사회·문화적 지표	- 인구증가율, 문화시설수 - 참여예술가수, 문화예술행사수 - 주민역량강화사업 참가자수 (교육, 워크숍 등) - 주민공모사업 추진수 - 대상지내 숙박시설 호수	-
경제적 지표	- 공시지가, 여객터미널 방문자수 - 사회적경제 조직수(종사자수) - 주요지점 보행통행량, 상가지역 공실수 - 공가 및 폐가수	- 지역상인 만족도 - 방문객 만족도
물리·환경적 지표	- 건축물 노후도, 신축 및 개량 건축물수 - 과소밀지수, 공원녹지면적 - 접도율, 주차장면적	주거환경만족도

3) 성과지표 측정계획

- 최초 설정된 성과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12월 달성치를 모니터링하고, 다음해 1월 추진실적 보고서 발간
- 성과지표 측정은 설문조사, 현장조사, 계측조사, 통계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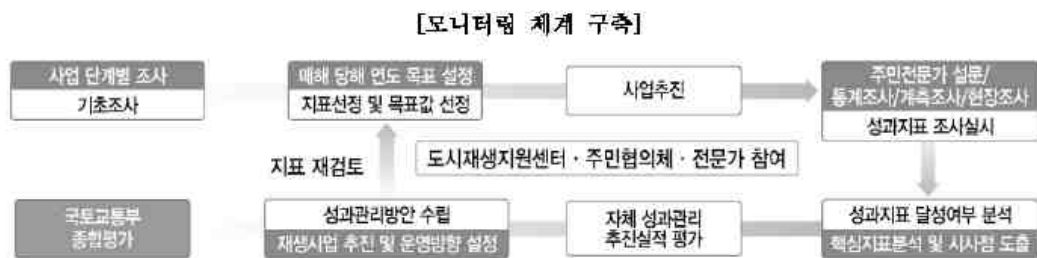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서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다도해(多島海)의 보영(保映)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낭만도시 목포

4) 자체 모니터링 평가 환류체계 구축

-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지표 선정 및 목표값을 설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도출 후 분석내용을 반영하여 보완



3. 도시재생사업 사후 점검계획

- 마중물사업 → 협업체계구축 → 운영·관리 위탁 → 운영수익 귀속(임대료 등) →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시작 등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체계 마련
- 목포시 전담조직과 현장지원센터는 현재 추진체계를 견고히 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목포시 공고 제2018-450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

목 포 시 장

1. 사 유: 노후화에 따른 공인(인증기용) 교체
2. 등록 및 폐기일 : 2018. 4. 2.(월)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이로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2.1cm 고딕체	인증기용
폐기	이로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2.1cm 전서체	"

목포시의료원 공고 제2018-13호

목포시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목포시의료원 정관 제54조에 의거 목포시의료원 2017년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목포시의료원장 최 태 옥

□ 2017년 세입·세출 결산

(1) 현금예금 결산액은

수 입	24,973,682,176원
지 출	21,556,481,160원
차기이월액은	3,117,201,016원이다.

(2) 재정상태는

자 산	8,632,752,855원
부 채	8,240,918,050원
자 본	391,834,805원이다.

※대차대조표에 의함.

(3) 손익은

수 익	19,644,063,591원
비 용	19,404,077,759원
당기순이익	239,985,832원이다.

※손익계산서에 의함.

(4) 지급능력

당좌자산	5,207,024,400원
유동부채	3,459,138,855원
차감이월액은	1,747,885,545원이다.

가. 대차대조표

제34(당)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33(전)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목포시의료원

(단위:원)

과 목	제34(당)기	제33(전)기	차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5,428,462,286	4,596,421,045	832,041,241
(1) 당좌자산	5,207,024,400	4,343,133,939	863,890,461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03,490,617	1,388,444,447	715,046,170
(국고보조금)	-99,760,000	-100,000,000	240,000
2) 단기금융상품	1,013,710,399	1,000,000,000	13,710,399
3) 의료미수금	2,196,700,466	2,078,744,690	117,955,776
(의료미수금대손충당금)	-35,748,782	-39,025,108	3,276,326
4) 기타미수금	7,005,000	6,414,000	591,000
5) 미수수익	13,625,379	-	13,625,379
6) 선급비용	3,471,921	3,097,080	374,841
7) 선급제세	4,529,400	5,458,830	-929,430
(2) 재고자산	221,437,886	253,287,106	-31,849,220
1) 약 품	135,293,734	161,066,552	-25,772,818
2) 진료재료	65,398,500	75,554,049	-10,155,549
3) 급식재료	3,052,700	2,121,200	931,500
4) 의료부대물품	17,692,952	14,545,305	3,147,647
Ⅱ. 비유동자산	3,204,290,569	3,151,070,569	53,220,000
(1) 투자자산	605,251,000	497,351,000	107,900,000
1) 장기대여금	260,000,000	180,000,000	80,000,000
2) 보증금	345,251,000	317,351,000	27,900,000
(2) 유형자산	2,599,039,569	2,653,719,569	-54,680,000
1) 토지	2,420,168,776	2,420,168,776	-
(국고보조금)	-1,280,000,000	-1,280,000,000	-
2) 건물	24,032,721,795	23,948,876,877	83,844,918
(국고보조금)	-17,694,989,487	-18,478,642,435	783,652,948
(감가상각누계액)	-5,729,785,394	-4,802,395,701	-927,389,693
3) 구축물	427,316,970	421,962,170	5,354,800
(국고보조금)	-110,828,881	-123,221,794	12,392,913
(감가상각누계액)	-119,080,430	-95,685,102	-23,395,328
4) 기계장치	880,820,700	839,350,400	41,470,300
(국고보조금)	-164,415,033	-217,760,985	53,345,952
(감가상각누계액)	-651,539,897	-581,933,000	-69,606,897
5) 의료장비	6,836,670,510	6,417,313,160	419,357,350

과 목	제34(당)기	제33(전)기	차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국고보조금)	-1,913,491,336	-1,944,451,146	30,959,810
(감가상각누계액)	-4,604,112,271	-4,099,061,266	-505,051,005
6) 차량운반구	342,279,403	342,279,403	-
(국고보조금)	-3,000	-9,613,868	9,610,868
(감가상각누계액)	-342,273,403	-332,662,535	-9,610,868
7) 공기구비품	2,466,965,830	1,764,364,890	702,600,940
(국고보조금)	-601,643,237	-63,253,619	-538,389,618
(감가상각누계액)	-1,595,742,046	-1,471,914,656	-123,827,390
자 산 총 계	8,632,752,855	7,747,491,614	885,261,241
부 채			
Ⅰ. 유동부채	3,459,138,855	2,633,350,062	825,788,793
(1) 매입채무	1,418,833,930	1,340,838,316	77,995,614
(2) 미지급금	402,127,800	67,001,900	335,125,900
(3) 예수금	235,925,525	192,172,005	43,753,520
(4) 미지급비용	247,552,893	190,188,994	57,363,899
(5) 유동성장기부채	310,000,000	-	310,000,000
(6) 예수보증금	11,549,860	10,000,000	1,549,860
(7) 미지급법인세	833,148,847	833,148,847	-
Ⅱ. 비유동부채	4,619,897,911	4,553,513,157	66,384,754
(1) 지역개발기금	2,790,000,000	3,100,000,000	-310,000,000
(2) 퇴직급여충당부채	4,827,636,927	4,414,778,951	412,857,976
(퇴직보험예치금)	-2,997,739,016	-2,961,265,794	-36,473,222
Ⅲ. 의료발전준비금	161,881,284	198,490,789	-36,609,505
부 채 합 계	8,240,918,050	7,385,354,008	855,564,042
자 본			
Ⅰ. 기본금(기본재산)	977,671,329	977,671,329	-
(1) 법인기본금	977,671,329	977,671,329	-
Ⅱ. 결손금	585,836,524	615,533,723	-29,697,199
(1) 차기이월결손금	10,720,604,301	11,031,734,581	-311,130,280
(2) 회계변경의누적효과	10,105,070,578	10,105,070,578	-
(3) 전기오류수정손실	210,288,633	212,643,476	-2,354,843
(4) 당기순이익	239,985,832	523,773,756	-283,787,924
자 본 총 계	391,834,805	362,137,606	29,697,199
부채 와 자본 총계	8,632,752,855	7,747,491,614	885,261,241

나. 손익계산서

제34(당)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33(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시의료원

(단위:원)

과 목	제34(당)기	제33(전)기	차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I. 의료수익	19,000,296,337	18,951,012,760	49,283,577
(1) 입원수익	13,935,171,536	13,689,382,524	245,789,012
(2) 외래수익	4,132,763,828	4,427,985,695	-295,221,867
(3) 기타의료수익	932,360,973	833,644,541	98,716,432
- 건강진단수익	766,643,893	480,733,721	285,910,172
- 직원급식수익	89,031,570	81,490,980	7,540,590
- 제증명수익	76,480,910	269,997,500	-193,516,590
- 구급차운영수익	204,600	1,422,340	-1,217,740
II. 의료비용	19,029,350,954	17,849,092,986	1,180,257,968
(1) 인건비	11,397,922,696	10,877,775,884	520,146,812
1. 급여	10,241,609,810	9,915,349,100	326,260,710
2. 제수당	144,029,460	131,541,100	12,488,360
3. 퇴직급여	1,012,283,426	830,885,684	181,397,742
(2) 재료비	4,124,255,416	3,864,036,716	260,218,700
1. 약품비	1,311,980,213	1,318,884,039	-6,903,826
2. 진료재료비	2,145,233,652	1,914,608,234	230,625,418
3. 급식재료비	667,041,551	630,544,443	36,497,108
(3) 관리운영비	3,507,172,842	3,107,280,376	399,892,456
1. 복리후생비	1,181,193,060	972,727,000	208,466,060
2. 여비교통비	30,247,440	28,766,220	1,481,220
3. 통신비	25,796,290	26,203,450	-407,160
4. 전기수도료	494,548,820	474,965,840	19,582,980
5. 세금과공과	135,313,830	91,170,310	44,143,520
6. 보험료	5,374,820	5,235,415	139,405
7. 환경관리비	41,162,050	45,443,760	-4,281,710
8. 지급임차료	27,094,000	24,186,950	2,907,050
9. 지급수수료	118,919,992	138,537,848	-19,617,856
10. 수선비	253,219,819	303,777,130	-50,557,311
11. 차량유지비	20,521,633	20,604,870	-83,237
12. 교육훈련비	24,179,150	53,166,180	-28,987,030
13. 도서인쇄비	5,835,440	8,315,350	-2,479,910
14. 접대비	23,281,940	36,228,120	-12,946,180
15. 행사비	1,743,500	5,935,406	-4,191,906
16. 연료비	55,062,825	49,848,440	5,214,385

과 목	제32(당)기	제31(전)기	차 감 (당기-전기)
	금 액	금 액	
17. 의료사회사업비	104,450,284	8,089,600	96,360,684
18. 소모품비	53,415,547	86,241,240	-32,825,693
19. 감가상각비	269,964,815	242,555,906	27,408,909
20. 광고선전비	17,889,900	19,000,700	-1,110,800
21. 대손상각비	12,397,088	43,374,347	-30,977,259
22. 피복침구비	21,487,500	30,440,000	-8,952,500
23. 외주용역비	197,089,159	204,890,604	-7,801,445
24. 잡비	1,488,140	22,547,050	-21,058,910
25. 의료분쟁비용	8,945,000	39,334,910	-30,389,910
26. 기타관리비	376,550,800	125,693,730	250,857,070
Ⅲ. 의료이익(손실)	-29,054,617	1,101,919,784	-1,130,974,401
Ⅳ. 의료외수익	607,157,749	511,887,717	95,270,032
(1) 의료부대수익	191,603,530	78,809,590	112,793,940
(2) 임대료수익	-	73,239,998	-73,239,998
(3) 수탁사업수익	101,796,000	103,000,000	-1,204,000
(4) 이자수익	93,686,172	47,962,735	45,723,437
(5)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	-	300,000
(6) 대손충당금환입	3,276,326	-	3,276,326
(7) 기부금 수익	99,000,000	113,000,000	-14,000,000
(8) 잡이익	112,495,721	95,875,394	16,620,327
(9) 자산수증이익	5,000,000	-	5,000,000
Ⅴ. 의료외비용	374,726,805	271,037,585	103,689,220
(1) 의료부대비용	129,037,466	59,475,331	69,562,135
(2) 수탁진료사업비용	101,796,000	103,000,000	-1,204,000
(3) 이자비용	93,000,000	93,191,444	-191,444
(4) 유형자산처분손실	-	2,010	-2,010
(5) 잡손실	50,893,339	15,368,800	35,524,539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203,376,327	1,342,769,916	-1,139,393,589
Ⅶ. 법인세비용	-	833,148,847	-833,148,847
Ⅷ.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 당기순이익	203,376,327	509,621,069	-306,244,742
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Ⅹ.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36,609,505	14,152,687	22,456,818
Ⅺ. 당기순이익(손실)	239,985,832	523,773,756	-283,787,924

※ 기타사항 : 상기에 공표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시 정 알 림 판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대상자 : 12월 결산법인('17년 귀속 법인 소득)
- 납부기한 : 2018. 4. 30.(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 참고



세정과 ☎ 061-270-8453

2018년 스마트 교실(검정고시 학습 지원) 안내



- 운영기간 : 2018년 4월, 8월 검정고시 시험일 까지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모집
※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운영대상 : 만9세~24세 검정고시 응시 예정자
- 비 용 : 무 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youth.mokpo.go.kr)다운로드 후 센터 방문 접수

○ 운영안내

과정	내 용	요일 /시간	정원	교육 장소
중학교 졸업과정	· 기초학습 수준 진단 및 학습전략 습득 · 학습 멘토 연결 통한 1:1멘토링 · 검정고시 자료 및 동영상 지원 ·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우선 제공	매주 화, 목 (14:00~16:00)	20명	본 센터 교육실
고등학교 졸업과정	· 중학교 졸업과정과 동일 · 강사지원(수학, 영어, 한국사) · 오후 학습 시 중식 제공	매주 월, 수, 금 (10:00~16:00)	20명	

※ 초등학교 졸업 과정은 본 센터와 상의 후 멘토 학습 가능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061-284-0924

시 정 알 림 판

경영자문서비스 「전문가 자문의 날」 운영

- 운영시간 :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 10:00~12:00(2시간)
※ 해당 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운영
- 운영대상
 -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사업 운영자
 -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반에 자문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지원내용 : 법률, 세무, 노무 부문 각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문서비스 무료 제공
- 운영장소 :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46

치매파트너 플러스(자원봉사자) 모집

-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 모집기간 : 연 중
- 모집대상 : 목포시민 누구나
- 활동내용 : 치매예방 관련 사업 봉사활동 참여,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극복 캠페인 등
- 활동혜택 : 봉사활동시간 인증
- 접수방법 : 치매안심센터 전화 접수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 061-270-4273

새로운 축제 · 전시 소식

목포시

목포이원섬 수건문화축제

2018. 4. 7. (토) ~ 2일간 4. 8. (일)

유달산 노적봉 및 원도심 일원

수군퍼레이드 해상퍼레이드
군악의장대 공연 김강술래 노적봉기
문화음악회 수군교대식 재현 해군통보단 공연 무형문화재 공연 등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2018. 목포 유달산 봉맞이 & 미술산 수군 문화제, 축하 특별 프로젝트

과거와 현재의 공존展
목포를 상상하다
Coexistence of the past and the present : Imagine MOKPO!

4. 6 FRI ~ 6. 3 SUN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1F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주최: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58729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로 116 TEL. 061-270-8300